

8.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개정령

대통령령 제15,562호 1997. 12. 31

주요 골자

- 가.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업종과 기술·인력개발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상품디자인업·폐기물처리업 및 폐수처리업을 추가함(령 제8조 및 제9조).
- 나. 투자액의 20퍼센트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요건을 신탁계약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로서 신탁재산의 50퍼센트 이상을 신탁설정일 부터 6월 이내에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으로 정함(령 제11조의4).
- 다. 법인이 사업용부동산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하여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부채의 한도를 1997년 6월 30일 현재의 부채총액으로 정하고, 부동산양도후 5년간의 부채비율이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승인된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의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면제세액을 추징하도록 한 바, 면제세액의 추징을 위한 부채비율 등의 계산방법을 정함(령 제37조의3).
- 라. 불입액의 5퍼센트를 세액공제하고 이자·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의 요건을 신탁계약기간이 1년이상 5년이하인 경우로서 신탁재산의 80퍼센트 이상을 주식으로 운용하는 신탁으로 하되, 1인 1계좌에 한하도록 함(령 제75조의4제1항).
- 마. 판매시점정보관리(POS)시스템을 도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을 경감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소매업·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 정함(령 제96조의6제1항).

개정 이유

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증권시장의 안정 및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(1997. 12. 13. 법률 제5417호)됨에 따라 법인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택회보